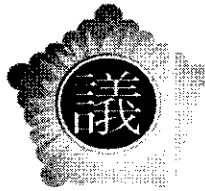


제 236회 임시회
2005. 2. 17(목)

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5년 2월 2 일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2월 2 일

3. 제안 이유

- 특별회계와 기금운영으로 이원화된 조례명을 특별회계로 일원화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의 융자조건 완화를 통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제명을 “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”로 개정
- 특별회계와 기금운영의 이원화된 부분을 특별회계로 일원화
- 융자 한도액 상향조정 : “3천만원”을 “5천만원”으로, “1억원”을 “2억원”으로 (안 제7조)
- 융자상환기간의 선택적 운영 :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또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(안 제8조)
- '03년 1월 이전에 지원된 융자금의 이율 감면 : “3%”→“2%” (안 부칙 제2조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으로 이원화된 부분을 특별회계로 일원화 하고 융자금의 지원 한도액을 시설자금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1억원은 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과 운용자금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3억원을 5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각종 원자재비용의 상승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개정부분에서 상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유라고 판단되나

-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로 '03년 1월 3일 이전에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율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 및 행정의 일관성 결여 등의 선례로 남을 수 있어 이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